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영장주의 적용 및 통지유예 기간 단축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75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3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5
3. 통신자료 제공 후 사후통지 유예 기간 단축 및 법원 허가 의무화	16
 [참고 1]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22

I. 제안경위

【황정아의원안】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8. 9.

다. 회 부 일 : 2024.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보좌진·언론인·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Ⅲ. 검토의견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통신이용자정보’¹⁾ 제공 제도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²⁾에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아이디, ⑥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됨.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통신일시 및 발·착신 번호 등 구체적인 통신행위에 관련된 정보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³⁾와

1) 2023.12.29.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자료”라 칭함.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3)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구분되는 개념임.

‘통신이용자정보’의 경우 법원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수사기관 등의 실무적인 협조요청만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교 >

구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등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공범위	이용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특정인의 통신사실 자료 - 가입자의 통신일시, 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사용도수,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정보통신기기 접속지 위치추적자료
요청주체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사전절차	-	- 검사·사법경찰관: 법원 허가 - 정보수사기관: 고법수석부장판사 허가
사후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 가입자에게 통지(23.12.29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 가입자에게 통지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개정안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 등’이라 함)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생략)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전기통신사업자는</u>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u>장이</u>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u>다음</u>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③ <u>법원</u> ----- ----- ----- ----- --- <u>장은</u> ----- ----- ----- ----- ----- --- <u>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u> --- ----- -----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 6.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요청할-----
-----.

1. ~ 6. (현행과 같음)

④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 -----법원의 허가를 받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⑤ 제4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4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략)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⑩ -----

-----제9항에-----

-----.

⑪ -----

-----제9항에-----

-----.
-----.

⑫ (현행 제8항과 같음)

<삭제>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12. (생략)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 17. (생략) ⑥ (생략)	과 같음) ⑤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83조제9항----- ----- ----- ----- 14. 제83조제11항----- ----- ----- ----- ----- 15.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별도의 사전적 절차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등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과 통신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취지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수사기관 등은 견제 없이 무분별하게

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계속된 바 있고, 최근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보좌진·언론인·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이나 기자는 제보자나 내부고발자 등과의 관계가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통해 드러날 우려가 있고,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조회 메시지를 받게 됨에 따라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견임.
- 국가인권위원회장은 2024년 8월 23일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해당 정보의 요청 요건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⁵⁾
- 관련하여, 포털사업자인 네이버는 영장주의 위배 우려를 고려해 현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5)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절차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48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네이버는 2024년 상반기 수사기관으로부터 10건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각각 21건, 8건의 요청을 받았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음.⁶⁾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 기본권 침해 및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나, 제21대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법제처,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이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의자 도주·증거인멸 우려, 타 입법례 및 해외사례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기하였던 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22.7.21., 2016헌마388)⁷⁾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⁸⁾

6) 주간경향 “사실상 사찰”...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이대로 괜찮나“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8190600021>

7)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은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 있으나, 통신자료 요청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를 부과하거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7.21)

8) < 제21대국회 시 법무부, 법제처,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의 관련 법안(이재정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이정문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

① 통신이용자정보는 개인 인적사항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내역)나 감청(통신제한)과는 통신비밀의 제한 정도가 다름

② 수사지연에 따른 피의자·공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③ 수사기관·법원 등에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

④ 타 법령에 영장주의 도입 유사사례* 없음

* (국내 사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감염병 의심자의 인적사항, 공직선거법에 의한 문자전송, 홈페이지 글 게시 등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요청 가능

(외국 사례)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영장이 필요 없고, 미국은 ‘자료제출 명령’으로 요청 가능

- 경찰청은 통신이용자정보는 대상자 특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헌법재판소도 통신자료 요청 관련 규정을 임의수사로 보고 있고, 지금도 관서장 결재 및 대상자 통지와 같이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영장 도입 시 과도한 업무 부담(연간 115만건) 및 수사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일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 등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법원 허가만 있으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 참고로, 제21대국회 제410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3.12.6)에서 전기통신사업법 18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음.
- 통신자료⁹⁾는 보호해야 될 통신비밀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적 자료 제공 요청은 부적정하며, 무분별한 조회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찬성하는 입장과, 피의자 조사 시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불가피하고 통신 자료를 조회할 때마다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 논의되었음.

9)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와 동일한 의미로, 2023.12.29.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자료’라고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은 찬반 논의 과정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¹⁰⁾ 내용을 고려하면, 유효기간(2023년 12월 31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 도입 관련 법안은 추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통신자료 통지 규정을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제21대국회 과방위원회 법안소위('23.12.6) 시 논의 내용>

영장주의 찬성 입장	영장주의 반대 입장
-통신자료 또한 보호해야 될 통신비밀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적 자료제공 요청은 부적정(강제처분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하며, 무분별한 조회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함. -적법절차 없이 수사기관이 내용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통신자료 요청행위가 강제력이 없다고 하나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 -통신이용자들 입장에서조차 사업자의 임의적 결정으로 자기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곤란함.	-피의자 조사 시 통화상대방 확인과정에서 통신자료 요청이 불가피하고, 피조회자가 범 죄 조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사항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임. -통신자료 요청의 오남용 우려에 대하여, 해당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로 수사 실무에서 활용되는 예가 매우 적음. -연 600만건을 영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요 선진국 중 통신자료에 대해 영장주의를 채택한 사례 없음.

10) 2016헌마388, 2022.7.21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판, 범죄 수사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 등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수사지연으로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과기부 등의 신중검토 의견, 사전적·사후적 통제 수단의 효과성, 각 수단 간의 정합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 등과의 연계성, 해외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허가절차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통신자료 제공 후 사후통지 유예 기간 단축 및 법원 허가 의무화

-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후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지를 유예하도록 하고, 현행 1회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월의 범위에서 당사자에 대해 통지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회 3개월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생략)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통지를 유예</u> 할 수 있다.	② ----- ----- ----- ----- <u>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지</u> 를-----.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u>두 차례에 한</u> 정하여 <u>매 1회 3개월의</u> 범	2. ----- ----- <u>한</u> ----- ----- <u>3개월의</u> -----

위에서 정한 기간 ④ ~ ⑧ (생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2023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19856호)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 제도를 신설¹¹⁾하였음.
- 구체적으로, 수사기관 등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임.
- 다만, ①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피의자, 피해자

1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받은 사실의 통지) ①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¹²⁾ 하였고, ③~⑤의 경우는 매 1회마다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유예가 가능하여 총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함.

○ 이에 따르면, 통지 유예를 할 경우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 통신이용자 조회로부터 약 7개월¹³⁾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23년 12월에 신설한 통지 유예 기간 규정이 과도하게 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2024년 1월 초에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내역이 2024년 8월 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¹⁴⁾
- 특히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 유예를 통해

1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13)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2024년 1월 1일 시행됨. 법 시행 이후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고, 통지 유예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1월 초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약 7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당사자에게 통지되었음.

14) 세계일보(2024.8.6 “檢”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에...도마 오른 ‘전기통신사업법’)

’24.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 당사자에게 뒤늦게 통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행정절차 진행 방해 등 ③~⑤의 사유로 인해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중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1대국회에서 논의된 유사한 법안¹⁵⁾에 대해 검찰청 및 경찰청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예기간 산정 및 타 입법¹⁶⁾ 고려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15) 의안번호 2116961 정필모의원안, 의안번호 2121352 이정문의의원안

16)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등도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하고 3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2·3항에서 ①생명·신체의 안전 위협 ②증거 인멸 ③행정절차의 진행 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

의견'을 제기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17)상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별도 승인절차 없이 유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금융거래정보' 보다 권리 제한의 정도가 낮은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통지유예 시 법원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임. 또한, 통지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중인 경우 제공일부터 1년 후 30일 내 통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정보'도 6개월 유예 가능(3개월, 2회 추가 연장)한 점을 참고하여,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유예기간은 현행법대로 6개월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 유예와 유사하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 유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등에 따른 과기부 등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 1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과기부 보도자료('24.1.19) 참고

□ 총괄 현황

- '23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8,668건, 문서 수 기준으로 570,810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2,122,927→2,418,668건), 문서 수 기준으로 88,244건(482,566→570,810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4.2개로, 전년 동기(4.4개)대비 0.2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79,716건(559,874→739,590건), 경찰은 100,985건(1,497,728→1,598,713건), 국정원은 5,080건(5,483→10,563건), 공수처는 1,642건(23→1,665건), 기타기관은 8,318건(59,819→68,137건) 각각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5,131건(65,240→80,371건), 경찰은 70,074건(387,901→457,975건), 국정원은 370건(941→1,311건), 공수처는 168건(9→177건), 기타기관은 2,501건(28,475→30,976건) 각각 증가

(단위 : 건)

구 분		'21년	'22년		'23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758,283	559,874	745,746	739,590
	문서수	70,811	65,240	75,434	80,37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7	8.6	9.9	9.2
경 찰	전화번호수	1,634,107	1,497,728	1,398,423	1,598,713
	문서수	393,554	387,901	407,696	457,97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4.2	3.9	3.4	3.5
국정원	전화번호수	16,514	5,483	7,054	10,563
	문서수	1,690	941	1,017	1,31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9.8	5.8	6.9	8.1
공수처	전화번호수	6,330	23	94	1,665
	문서수	148	9	42	17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42.8	2.6	2.2	9.4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69,086	59,819	65,242	68,137
	문서수	32,127	28,475	28,819	30,97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2	2.1	2.3	2.2
합 계	전화번호수	2,484,320	2,122,927	2,216,559	2,418,668
	문서수	498,330	482,566	513,008	570,81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5.0	4.4	4.3	4.2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는 312건(18,676→18,988건), 이동전화는 78,915건(436,154→515,069건), 인터넷 등은 9,017건(27,736→36,753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1년	'22년		'23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유선전화		22,680	18,676	18,598	18,988
이동전화		448,686	436,154	464,868	515,069
인터넷 등*		26,964	27,736	29,542	36,753
합 계		498,330	482,566	513,008	570,810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